

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전부 개정안

의안 번호	제2019-4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6월 25일

제출자 : 원장

제안설명자 : 감염관리팀장

1. 개정이유

- 「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 1.1.5 [공중보건위기 대응]」 조사항목에 맞춰, 「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「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(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호)」 제10조 기본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심의 상정함.

2. 주요 개정 내용

- 「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(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호)」 제10조 기본사항 반영

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(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)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(이하 “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”이라 한다)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환자진료·감염관리·행정지원·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.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 4. 감염병환자 등의 입·퇴원 시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5.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, 인수인계 과정,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 시간에 관한 사항 6. 검사, 진료, 의료진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7.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 8.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9. 다른 감염병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10. 위기상황 종료 후,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가상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 ④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·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⑤ 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019년 감염발생감시 계획 수정안

의안 번호	제2019-5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6월 25일

제출자 : 원장

제안설명자 : 감염관리팀장

1. 수정이유

- 모든 입원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염 문제를 모니터링하고,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하고자 심의 상정함.

2. 주요 수정 내용

- 원내 감염감시 대상 확대 : 중환자실 입원환자 ⇒ 모든 환자
 - 기도, 요도, 혈관 내 침습적 기구 사용 환자 집중 감시 및 개선활동 병행
 - 감염발생감시 결과 및 부서 피드백 강화
- 세부자료 : “별첨“

3. 심의 후 조치사항

- 감염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을 받아 원장 보고 후 시행하고자 함.